

# 外國의 關稅制度(2)

■ 오늘날 國際社會는 自國의 經濟的利益을 最大限 確保코자하는 世界各國의 보이지 않는 戰爭이 보다 치열해져가고 있고, 特히 貿易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各國의 競爭과 摩擦은 貿易障壁에 대한 關心을 급증시키고 있다.

關稅는 各國의 産業保護와 財政收入 寄與를 위하여 活用되어온 政策手段이라 할 수 있고, 國家間 貿易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障壁으로서의 重要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本稿는 財務部 關稅局에서 發刊한 資料('92政策資料/關稅)로서 우리의 관심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各國의 關稅率 體系 및 關稅 關連 制度에 關하여 整理한 것이다. ■

## Ⅲ. E C

### 1. 貿易 및 關稅制度 概要

#### 가. 貿易概況

- 貿易規模 : EC를 단일시장으로 볼 때 世界最大의 貿易國임.
- o 輸出入規模 및 世界市場 占有比('90 基準, 域內貿易 包含)
  - 輸出 : 13,514億弗 → 世界 總 輸出의 38.8%
  - 輸入 : 14,119億弗 → 世界 總 輸入의 39.1%
- 貿易構造

- o 輸出入 모두 다양한 商品分野에 걸쳐 이루어짐.
- '80年代 이후 輸出에서는 自動車·보석·化學製品·醫藥品, 輸入에서는 사무기기 및 部品·情報處理器機·트랜지스터·通信裝備등의 增加率이 두드러짐.
- o 貿易構造는 各國의 自然자원·기후·技術發展 정도 등을 反映하고 있음.
-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 農産物 輸出이 主宗
- 벨지움, 獨逸, 스페인 → 自動車 輸出이 主宗

- 포르투갈 → 의류 輸出이 主宗
- 輸入은 대부분 國家에 있어 農産物, 化學製品, 가죽, 고무, 종이製品, 鑛産物, 其他 消費財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表1〉 상품구조별 수출입 비중

- 貿易 對象國
  - 會員國의 總 輸出入중 EC域內貿易의 비중이 매우 높음.
  - 總 輸出의 60%, 總 輸入의 58%가 역내무역으로 이루어짐.('90基準)
  - 域外貿易에 있어서는 특혜무역 대상권인 EFTA國家와의 貿易比重이 높음.
    - 輸出 : 總 輸出의 10%, 域外輸出의 25% 占有('90基準)
    - 輸入 : 總 輸入의 10%, 域外輸入의 24% 占有('90基準)
  - 域外 貿易의 단일대상국으로는 美國이 최대의 貿易 상대국임.
    - 輸出 : 總 輸出의 7%, 域外輸出의 18% 占有('90基準)
    - 輸入 : 總 輸入의 7%, 域外輸入의 17% 占有('90基準)
  - 開途國과의 貿易比重은 減少趨勢

〈域外貿易중 對開途國 貿易比重 推移〉

	'81	'89
輸 出	30%	11%
輸 入	45.5%	30.5%

〈表2〉 EC의 分野別 貿易相對國 比重

나. 關稅制度

- '57. 3 로마條約 締結 以後 域內 關稅의 段階的 引下를 통하여 '68. 7 關稅同盟 完成
  - 域內 關稅체제 및 域外國家에 대한 共同關稅 適用
  - 但, 유럽 石炭·鐵鋼 共同體 條約 (ECSC Treaty : '51.4)에 따라 獨逸·그리스·프랑스·이태리는 石炭에 대하여 各國의 독자적 關稅率 適用
- 關稅同盟의 운영
  - 關稅同盟 運營은 집행위원회와 會員國을 주축으로하여 役割分擔이 이루어지고 있음.
  - 執行委員會(Commission)
    - 理事會(council)의 결정 이전에 草案作成을 위한 準備作業, 統計資料 蒐集, 作業班(working party)에서 各國의 立場 收斂·調整
    - 理事會에서 採擇된 規制의 執行·管理
    - 域外國과의 對外關係에 있어 공동체를 대표
  - 會員國
    - EC의 理事會, 各種 委員會 및 作業班 등에 各國의 대표를 派遣, 自國의 利益을 대변
      - 規則制定(rule-making)과 關聯한 主權은 공동체에 移讓하였으나 同 制度의 framework內에서 나름대로의 권한 行使
    - 執行委員會가 各種 政策 및 規則의 執行管理를 擔當하기는 하나 실제 關稅行政의 執行은 各國에 一任·遂行
      - 關稅同盟의 效率的 運營은 各會員國의 行政構造의 效率性 如何에 依存

## 2. 關稅率 體系

### 가. 關稅率 構造

- EC의 對外 共同關稅는 2 種類로 區分됨
  - o Conventional Rates : MFN稅率
    - GATT체약국 및 雙務協定 締結로 MFN대우를 부여한 國家로부터의 輸入에 適用함을 원칙으로 함.
    - 實際로는 그 外의 모든 國家에 대하여도 Conventional rate를 適用함으로써 國家에 따른 차별은 없음.
  - o Autonomous Rates : 음 2가지 경우에 適用
    - Conventional Rate가 정하여지지 않은 品目
    - Conventional Rate가 정하여진 品目 中에서도 Autonomous Rate가 더 낮게 설정된 品目

### 나. 關稅率의 形態

- 從價稅 : 가장 일반적으로 適用됨.
- 從量稅 : 農產物 一部, 石炭, 소금, 鹽 化칼륨 등에 적용
- 선택세(alternate tariffs)
  - o 종량세로 關稅의 上·下限을 설정하고 그 範圍內에서 증가세로 關稅 賦課
    - 國際價格의 變化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關稅障壁 維持로 國內産業 保護 및 세입감소 방지
  - o 對象品目 : 담배, 과일, 채소, 카페인, 유리제품, 시계 일부등
- 계절관세(Seasonal tariffs)
  - o 계절에 따라 價格 變動이 심한 品目에 대하여 關稅率을 신축적으로 조절
  - o 對象品目 : 과일, 채소, 화훼류

- o 계절관세 적용 輸入比重 : 總輸入의 0.5% 水準

## 3. 關稅率 水準 및 關稅讓許現況

### 가. 關稅率 水準

- EC는 비교적 낮은 關稅率 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며 工產品稅率이 農產物稅率보다 낮음

〈表3〉 EC의 平均關稅率 水準

- o 그러나 위 평균관세율 계산에 있어 包含되지 않은 農產物의 종량세 및 가변 수입賦課金の 效果를 考慮할 경우에는 平均 稅率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

### 나. 關稅率 分布

- 全體 品目中 約 10% 該當品目에 無稅 適用
  - o 輸入額 비중으로는 MFN輸入額의 30%가 무세적용
    - 農產物에 있어 無稅 適用對象 輸入에는 油菜·油粕이 主宗(全體 農產物 輸入의 28% 상당)

〈表4〉 관세율別 MFN 수입액 비중

### 다. 加工度別 稅率隔差

- 原材料에 대하여는 무세 또는 매우 낮은 稅率 適用
  - o 木材, 원피, 가죽, 고무, 동, 니켈, 주석등 → 平均稅率이 1%를 약간 상회하는 水準
- 半加工品 및 최종제품 : 5% 以上 水準의 稅率 賦課
- 加工度別 稅率隔差는 금속, 담배등에

현저함.

- 製造담배에 특히 高關稅 適用(52~117%)

#### 라. 關稅讓許 現況

- 現行讓許範圍

- 輸入額 基準 : MFN輸入의 99%가 讓許稅率 適用
- 品目數 基準 : 全體 品目の 92% 該 當品目 讓許品目임

- UR協商에서는 工產品의 거의 100% 該當品目에 대하여 讓許計劃 提出

- 農產物 Offer는 未 提示

〈表5〉 UR協商前後 讓許範圍 比較

### 4. 特惠關稅制度

- 特惠輸入比重

- 全體 輸入의 約 60%가 特혜무역 對象國으로부터의 輸入
  - EFTA國家, GSP 수혜국, 지중해 연안국, Lome協定 對象國등
- 그러나 모든 輸入品目에 特惠가 賦與되는 것은 아님.
  - 農產物 : 대부분 除外되거나 特惠가 制限되어 있음.
  - 工產品 : 一部品目은 GSP對象에서 除外 및 수혜국 제한
  - 其他 : Celling, 원산지 規定 및 Safeguard등에 의한 制約
- 特惠輸入比重은 '70年代에 비하여 '80年代에 들어와 減少趨勢를 나타냄

〈表6〉 EC의 特惠輸入比重

- GSP 制度

- '71. 7 世界 최초로 施行

- 對象國 : 140個國 및 25個 關稅領域
  - 韓國은 知的財産權 保護와 關聯한 통상마찰로 인하여 '88. 1~'91. 12 間 GSP공여를 停止당한 바 있으나, '92. 1 以後 공여 재개
- 最近의 評價에 따르면 GSP의 惠澤이 소수의 先發開途國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最貧國들은 거의 同 制度를 活用하지 못하고 있음
  - 이들 國家의 行政上 결함, 情報의 不足, 原產地 規定의 制限의 效果 등의 影響
- 品目別 卒業政策 導入('87)
  - 特定受惠國으로부터의 特定品目 輸入額이 同 品目の EC 域外 總 輸入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該當 品目を GSP 공여대상에서 卒業

〈表7〉 GSP 受惠國으로부터의 輸入中 實際 受惠 比重

### 5. 原產地 規定

- 基本的으로 2가지 體制로 이루어져 있음.
  - MFN 輸入對象
    - 原則 : 輸入商品이 전적으로 生産된 國家 또는 經濟的 妥當性이 認定되는 “최종적인 實質的 工程·加工”(last substantial working or processing)이 이루어진 國家를 原產地로 간주
    - 최종적인 實質的 工程의 基準은 다 음 2가지 方法을 통하여 適用
      - i) 技術的 實驗 基準 : 特定商品이 어떤 工程을 거쳐 그 特質이 變化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特性을 가지게 되었는가가 여부를

결정

ii) 附加價值 基準 : 商品의 組立工程이 복잡하여 技術的 實驗이 困難한 경우 同 商品의 附加價值的 일정비율이상인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

○ 特惠輸入對象

- 原則 : 輸入商品의 “充分한 變形 (Sufficient transformation)” 이 이루어진 國家를 原產地로 간주
- 充分한 變形의 基準은 關稅分類番號 (tariff heading) 의 變動에 초점을 둠
  - 特定商品의 輸出國이 同 商品 生産에 있어 輸入된 投入財를 使用하여 그 투입재와 최종 生産재의 關稅分類번호가 變動된 경우 充分한 變形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原產地 累積制度

- 性格 : GSP 受惠國中 일부 經濟블록 國家에 대하여 原產地 規定의 適用을 緩和
- 對象經濟블록
  - 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부르나이)
  - Andean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 CACM (중미공동시장,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 原產地 決定方式
  - 위 블록내의 어떤 國家(A國)가 같은 그룹내의 다른 國家(B國)로부터 輸入한 投入財를 使用하여 最終재를 生産, EC로 輸出하는 경우 同 投入財의 原產地를 당해 最終輸出國(A國)으로 간주

○ 其 他

- ACP, OCT 그룹國家 → EC와 함께 3個 그룹을 하나로 간주하여 原產地 누적제도 適用
  - \* ACP : 아프리카, 카리브, 太平洋그룹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 '90 現在 69個國
  - \* OCT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associated with the EC) : EC 國家의 海外屬領
- Maghreb 그룹國家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 EC와 함께 2個 그룹을 하나로 간주하여 原產地 누적제도 適用
- 地中海 沿岸國家 → 그룹內 個別國家와 EC間에 雙務的인 原產地 累積制度만 認定
- 나머지 GSP 수혜국에 대하여는 原產地 累積制度가 適用되지 않음.

## 6. 可變 輸入賦課金 (Variable Import Levy)

- 共同農業政策의 施行에 있어 重要한 역할
- 主要 對象品目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제품, 계란, 밀, 쌀, 其他穀物, 올리브유, 설탕, 農産物加工食品 등 主要 農産物에 광범위하게 適用
  - 賦課對象 品目の 比重은 점차 減少 趨勢

〈表8〉 食品類의 可變 輸入賦課金 賦課對象의 比重變化

- 賦課方式
  - EC가 設定한 輸入 境界價格(import threshold price)과 가장 낮은 C.I.F. 輸入 價格의 차이만큼 賦課金 賦課
  - EC의 수입경계가격이 EC域內 市場價格이나 生産者 중재가격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변수입 부과금은 상당한 輸入障壁의 效果를 가지게 됨.
- 徵收額 規模('89基準)
  - 全體 關稅 수입 : 103億 ECU
  - 가변 輸入賦課金 : 12億 ECU(關稅 수입의 約 12% 차지)
- 擔當機關 : 執行委員會(commission)
- 節次 : 제소 → 調查開始與否 → 調查 → 判定
  - 최종 判定 이전에 暫定關稅 賦課 可能
- 調查期間 : 일반적으로 1年以內에 종결토록 規定
  - '80年代 이후 調查件數中 約 55%가 1年 以內에 調查 종결
  -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大部分의 調查期間이 1年을 초과 → 事件의 複雜性·業務 過重등이 要因임.
- EC는 덤핑防止 關稅의 活用度가 가장 높은 國家임

〈表9〉 EC의 덤핑規制措置 件數

## 7. 關稅上 輸入被害 救濟制度

### 가. 덤핑防止 및 補助金 相計 關稅

- 덤핑·補助金 關聯措置는 EC의 共同 通商政策의 가장 重要한 수단
  - 理事會 規定에 근거하여 運營
  - 域內 國家間 交易에 대한 措置에 관하여는, 別途의 法的 근거가 없으며 一般적 競爭原則에 의거
    - 그러나 종전 EC 10個國과 新規加入國인 스페인·포르투갈間에는 '92까지 暫定 덤핑防止規定 適用
  - GATT 條約國에 대하여는 個別 덤핑防止·補助金相計 協約의 서명국 여부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지 않음.
    - EFTA, 지중해 連안국가와 같은 雙務協定締結國에 대하여는 措置 賦課 이전에 情報提供·協議 機會 賦與
- 調查擔當機關·및 期間

- '80年代에는 關稅賦課 보다는 價格 約束(price undertakings)을 더 빈번히 使用(대략 2:1의 比率)
- 이와같은 유형에서 벗어나는 主要 分野는 纖維, 鐵鋼임.
- 덤핑防止關稅 및 상계관세의 賦課期限 是 5年임.
  - 그러나 同 期限 만료 이후에도 被害 憂慮가 있는 경우 재차 賦課 可能
- 나.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 action)
  - EC의 緊急輸入制限措置는 GATT 第 19條 및 EC理事會 規定에 근거하고 있음.
  - 措置內譯
    - 지금까지 모두 17件의 措置가 취하 여짐.
      - '70年代에 4件, '80年 以後 13件
      - 이중 現在 3件의 措置가 계속 施行 되고 있음.
    - 한편 EC와는 別개차원에서 現在 會

員國中 獨逸은 '58年 以來 石炭輸  
入에 대한 規制措置를 취하고 있  
음.

· 이는 GATT 會員國의 第19條  
Safeguard 措置中 가장 오래 지속  
되고 있는 것임.

- EC의 緊急輸入制限措置는 '60~'70年  
대에 비하여 '80年代에 增加된 반면,  
個別 會員國의 緊急輸入制限措置는  
'70年代 以後에는 취해진 바 없음.

<p>〈表10〉現行 緊急輸入制限措置內譯 〈表11〉年度別 EC 內 個別會員國의 緊急輸入制限措置內譯</p>
---

- EC執行委員會는 부패성 產品(Perish-  
able products)에 대하여 신속한  
賦課가 可能한 GATT 第19條 措置  
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여타 分野의 商品에 대하여는  
GATT 第19條의 措置가 부적절하  
다는 견해

#### 다. 輸入監視制

- 會員國의 要請이 있거나 또는 共同體  
執行委員會가 問題가 있다고 判斷되는  
商品을 골라 一定期間을 정해서 그 輸  
入動向을 綿密히 點檢하는 制度

○ 일반적으로 輸入許可制를 동반  
○ 정기적(보통 매월 10일까지)으로 前  
月の 輸入許可 動向을 原產地, 規格  
및 單價別로 EC 當局에 상세히 報  
告할 義務를 會員國에 賦課

### 8. 觀察 및 評價

- EC는 世界 최대의 關稅同盟을 형성하  
고 共同 對外政策을 樹立·執行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세영역임.

- 關稅率 構造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모든 國家에 協定稅率(Conventi-  
onal rates)의 適用을 통하여 MFN 대  
우를 賦與하는 것이 特徵임.

○ 그러나 關稅率의 形態는 증가세 以  
外에 종량세, 選擇稅, 계절관세등으  
로 다양한 편이며, 가변 輸入賦課金  
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特惠關稅制度를 維持하  
고 있음.

- 關稅讓許範圍는 높은 편이며 平均關稅  
率도 상당히 낮은 水準임.

○ 그러나 農産物에 賦課되는 가변부과  
금은 實質的인 高關稅의 역할을 담  
당하며 상당한 輸入障壁의 機能을  
수행

- GSP의 運營에 있어서는 各種 제약조  
건으로 인하여 開途國들의 現實的 受  
惠에 많은 제한이 따름.

○ GSP 對象 輸入中 실제 受惠比重은  
약 40% 水準에 불과

- 덤핑防止·상계관세등의 關稅上 輸入  
規制 措置는 其他의 貿易規制 수단과  
함께 域內 産業保護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同 措置 발동의 主要對象中 우  
리나라를 包含한 NICs의 비중이 매  
우 높음.

## IV. 캐나다

### 1. 貿易 및 關稅制度 概要

#### 가. 貿易概況

- 貿易規模('91 基準): 輸出 世界 8位,  
輸入 世界 7位の 國家(EC를 1個國으

로 볼때에는 輸出·入 모두 世界 4位의 貿易規模임)

- 輸出 : 1,290億弗 → 世界 總 輸出의 3.7%
- 輸入 : 1,290億弗 → 世界 總 輸入의 3.4%
- 最近 經濟與件이 惡化됨
  - 最大 貿易相對國인 美國의 景氣沈滯
  - 美國과의 自由貿易協定(FTA)으로 國內産業의 調整壓力 增大
  - 主要 輸出商品인 밀·펄프·鑛山物 등의 國際的 供給過剩 및 價格下落
- 貿易構造
  - 美國과의 貿易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
    - '90年 基準 全體貿易의 72%가 美國을 相對로 이루어지고 있음(輸出의 75%, 輸入의 65%)
  - 輸出 : 農·林産物 및 天然資源이 主종(美國에 대하여는 自動車 輸出 比重이 큼)
  - 輸入 : 自動車·機械類等 非天然資源 産品 위주

〈表12〉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表13〉 캐나다의 主要 貿易相對國 比重

#### 나. 關稅制度

- 동경라운드에서 關稅率 大幅 引下
  - 工産品의 단순평균세율이 約 40% 引下됨.
  - 신발·纖維·衣類 등의 分野에 高關稅 殘存
- 다른 나라에 비해 關稅率 體系가 복잡한 것이 特徵
  - 개별 輸入品目에 대한 關稅率은 原産地 및 최종용도(end-use criterion)

ion)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MFN稅率, 一般稅率, 特惠稅率 등 여러가지 種類의 關稅率 體系를 갖고 있음.
- 덤핑防止 制度의 活用도가 높음
  - 措置 對象分野에 있어서는 鐵鋼製品이 큰 比重을 차지함.
  - 그러나 80年代 中盤 以後 施行中인 措置件數는 減少趨勢
    - '89 現在 117件 → '91 現在 63件

## 2. 關稅率 體系

### 가. 關稅의 種類 및 適用順位

- 種類 : MFN稅率, 特惠稅率, 一般稅率로 크게 分類
- MFN稅率
  - 對象
    - ┌ GATT 會員國
    - └ 雙務間 貿易協定에 의한 MFN대우 적용국
  - 原産地 要件의 충족
    - ┌ MFN 수혜국으로부터의 商品의 直接運送
    - └ 附加價值基準 : 完製品 價格의 50% 이상을 當該國에서 附加
- 特惠稅率(Tariff Preferences)
  - 對象 : 自由貿易協定·一般特惠關稅 및 其他 特惠貿易協定 對象國
  - 原産地基準 : 一般的으로 40~60%의 附加價值基準 充足 必要
- 一般稅率(General Tariff)
  - 對象
    - ┌ MFN제외국 및 關稅協定을 締結하지 않은 國家(알바니아 북한, 리비아, 몽고, 오만)
    - └ 輸入商品의 原産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대부분 품목에 35%의 稅率이 적용됨.

－ 適用順位：特惠稅率 → MFN稅率 → 一般稅率의 順으로 適用

### 나. 關稅의 形態

- － 증가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음
- － 其他形態：종량세 및 복합세
  - 農產物(낙농제품, 육류등) 및 纖維類에 賦課
    - 農產物의 경우 HS 1~24류의 約 1/4 該當品目이 종량세 賦課 對象임.
  - 복합세(Composite rates)：2가지 유형
    - 종량세 一定金額 및 一定率의 증가세를 합산 부과
    - 증가세로 賦課하되 關稅의 上·下 限을 종량세로 표시
- － 계절관세(Seasonal tariffs)
  - 價格變動이 계절에 따라 심한 物品에 대하여 關稅率을 계절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여 수급량을 조절
  - 對象品目：채소, 과일, 화훼류
  - 계절관세의 적용與否 및 適用期間은 義務의으로 規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園藝위원회(Horticultural Council)의 자문을 거쳐 농무장관이 결정함.

## 3. 關稅率 水準 및 加工度別 稅率隔差

### 가. 關稅率 水準

- － 전반적으로 稅率水準은 낮은 편임
  - 복잡한 關稅率構造 및 각종 特惠措

置로 인하여 品目別 稅率水準의 正確한 測定이 어려움.

- 特惠協定 등으로 인한 無關稅 輸入이 全體 輸入의 2/3를 차지하므로 MFN 平均稅率과 實行平均稅率의 차이가 큰 것이 特徵
  - '90年 基準 施行平均稅率은 3.4%, MFN平均稅率(종량세 및 복합세의 증가세 상당치 除外)은 8.7%

### 〈實行平均關稅率 推移(加重平均)〉

'88~'89	'90	'91
3.7%	3.4%	3.3%

### － 關稅率 分布範圍('90)

- MFN 증가세：0~30%
- 特惠稅率 및 종량세의 從價稅 상당치를 包含時：0~71%

### 나. 加工度別 稅率隔差(Tariff Escalation)

- － 原料 및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는 商品에는 低率關稅 및 無稅適用
  - 高加工 商品일수록 關稅率이 높아지는 傾向
- － 農產物·工產品 모두 Tariff Escalation 存在
  - 農產物의 경우 加重平均·單純平均 모두 加工度가 높아질수록 稅率은 높아지는 傾向
  - 工產品의 경우는 單純平均 基準으로 볼때 半加工品과 完製品의 稅率이 비슷한 水準이나, 加重平均 基準으로는 完製品이 半加工品보다 稅率이 낮음.

- － 美國과의 FTA擴大에 따라 輸入額 加重值로 본 加工度別 稅率隔差는 縮小될 것으로 展望됨.

- 美國으로부터의 輸入이 全體輸入에

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기 때문('90年 基準 65%)

〈表14〉 加工度別 稅率水準

#### 4. 關稅讓許

- 全體品目的 98%가 讓許品目임.
- o 工產品의 讓許比率이 農產物보다 높음.

〈表15〉 關稅率 分布別 讓許現況

- o 輸入額 比重으로는 農產物의 98%, 工產品의 99%가 讓許 對象임.
- UR協商 前後 讓許水準
  - o UR協商에서는 거의 全品目으로 讓許範圍를 擴大하는 讓許案 提出

〈表16〉 UR協商 前後 讓許範圍比較

#### 5. 特惠關稅制度

##### 가. 美國-카나다 自由貿易協定

- 美國과의 1989. 1. 1 FTA에 따라 다음 3가지 基準에 의해 美國으로부터의 輸入商品에 關稅를 賦課하지 않음.
  - o 競爭力이 있는 分野
    - 對象品目 : 컴퓨터 및 동 裝備, 모피 및 모피의류, 신선·냉동어류 동물사료, 스키·스케이트, 위스키 등(美國과의 貿易에서 約 15% 차지)
    - 1989. 1. 1부터 無稅適用
  - o 5段階 措置分野
    - 對象品目 : 機械, 페인트, 가구, 종이·종이製品, 石油 등(美國과의 貿

易에서 約 1/3차지)

- 매년 20%씩 5년에 걸쳐서 關稅引下, 1993. 1. 1부터 無稅適用
- o 10段階 措置分野
  - 對象品目 : 纖維·衣類, 機械, 加工食品, 신발, 醫藥品, 化粧品 등
  - 매년 10%씩 10년에 걸쳐서 關稅引下, 1998. 1. 1부터 無稅適用
- 原產地 要件
  - o 附加價值基準 : 完製品 價格의 50% 이상을 美國 또는 카나다에서 附加

##### 나. 一般特惠關稅(General Preferential Tariff : GPT)

- 카나다의 GSP制度를 일컫는 것으로서 1974. 7. 1부터 施行
  - o 1981年 對象品目 擴大
  - o 1983年 關稅率 引下幅 擴大
- 適用稅率
  - o 一般的으로 MFN稅率의 2/3이하 適用
- 對象品目
  - o 關稅賦課 對象品目的 約 2/3가 GPT 대우를 받음
  - o 農產物보다 工產品이 GPT 適用對象이 많음.
    - 例外品目 : 農產物, 纖維·衣類, 신발, 특수강, 전자관 일 부 등
- 對象國家
  - o 163個 開途國 및 關稅領域
  - o GPT 수혜개도국으로부터의 輸入이 全體 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낮음 : 約 6% 水準
  - o 卒業政策이 없는 것이 特徵
- 原產地 基準 : 附加價值基準
  - o 完製品 價格의 60% 이상을 受惠國 또는 카나다에서 附加 必要

- 商品 直接運送 要件 充足
- 最貧開途國에 대한 特惠
  - 適用稅率 : GPT 품목에 대하여 無稅適用
  - 原產地 基準 : 附加價值基準을 40% 이상으로 緩和

#### 다. British Preferential Tariff(BPT)

- 對象國家 : 英聯邦 66個 國家 및 關稅 領域
  - 英國 · 아일랜드 → EC 加入以後 BPT 適用對象에서 除外시키고 MFN 稅率을 適用
- 特惠內容
  - 一部品目에 대하여 GPT水準의 稅率適用
  - 그러나 對象國이 大部分 GPT 適用對象 國家이기 때문에 實質的으로는 GPT에서 除外된 一部品目(纖維 · 農產物等)의 關稅引下 惠澤만 있음.
- 原產地 基準
  - 附加價值基準 : 製品價格의 50% 이상을 수혜국에서 부가
  - 수혜국으로부터 直接運送 條件

#### 라. Australia Tariff

- 캐나다-호주 貿易協定(1932)에 의함.
  - BPT適用 및 一部品目(42個)에 추가 特惠賦與
  - 주로 農產物에 該當
- 原產地 基準 : BPT와 同一
  - 단, 캐나다에서 附加된 附加價值도 合算하여 認定

#### 마. New Zealand Tariff

- 캐나다-뉴질랜드 貿易協定(1932)에 의함
  - BPT適用 및 一部品目(48個)에 추가

가적 特惠賦與

- 原產地 基準 : Australia Tariff와 同一

#### 바. CARIBCAN Tariffs

- CARIBCAN計劃(1986)에 의함.
  - '86年 GATT로부터 Waiver 獲得 (Waiver 기한 : '98)
- 카리브연방 國家들로부터의 輸入 大部分에 無稅適用
  - 一部 例外 : 纖維 · 衣類, 신발, 가방 · 핸드백, 가죽의류, 운활유, 메탄올
  - 단, 纖維 · 衣類는 大部分 國家에 適用되는 輸入쿼타를 適用하지 않음.
- 原產地 基準
  - 附加價值의 60% 이상을 카리브국가 또는 캐나다에서 부가
  - 수혜국으로부터 直接運送 條件

#### 사. 其他

- 의회의 立法措置 또는 行政府令에 의해 政策的으로 關稅引下 特惠 賦與
  - 對象品目 : 化學 · 플라스틱, 自動車 및 部分品, 航空機 및 部分品, 機械 및 部分品, 纖維, 타이어등
  - 適用稅率 : 無稅 또는 낮은 稅率
- 關稅還給(Duty Drawback)
  - Home Consumption Drawback : 國內用 特定商品의 製造에 投入된 輸入品에 관한 關稅의 還給
  - Drawback for Export and Inward Processing
    - Drawback for Export : 再輸出되거나 輸出商品 製造에 投入된 輸入品에 관한 關稅의 還給
    - Inward Processing : 輸出用 原資材에 대한 還給이라는 點은 동일하나 還給 이전에 실제로 關稅를 納付

하지 않고 擔保提供에 의하여 이를 猶豫토록 하는 制度

- Machinery Program : 國內生産이 되지 않는 機械類의 輸入에 대한 關稅의 還給

## 6. 關稅上 輸入被害 救濟制度

### 가. 덤핑防止 및 補助金相計關稅

- 1979年 GATT 덤핑防止 協約에 加入
- 現在 特別 輸入措置法(Special Import Measures Act : 1984)에 의해 덤핑防止 · 相計關稅 問題를 함께 규율
- 덤핑防止 措置件數는 最近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水準임.
  - 施行中인 措置數(1989 → 1991)
    - 덤핑防止 關稅 : 117 → 63
    - 價格 約束 : 13 → 6
  - 덤핑防止關稅 件數가 줄어든 理由
    - 金屬類 半加工品(강철와이어, 파이프, 튜브)에 대한 措置 終了
    - 덤핑防止關稅賦課에 관한 일몰 조항(sunset clause)의 適用 → 재결정이 없는 한 自動적으로 5년만기로 效力 喪失
  - '80년대 덤핑防止關稅의 주된 대상국은 美國이었으나 最近 美國에 대한 措置는 줄어들고 브라질, 韓國, 臺灣등 開途國에 대한 措置가 增加
- 補助金相計關稅는 덤핑防止關稅와는 달리 발동건수가 적으나 1980年 후반 들어 다소 增加하는 趨勢로서, 農産物에 있어 두드러짐.

〈表17〉 캐나다의 덤핑防止 措置

〈表18〉 캐나다의 補助金相計關稅措置

### 나.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 action)

- 一般的 輸入에 대한 緊急輸入制限措置
  - 發動要件 : 輸入急增에 의한 심각한被害(Serious injury) 發生 또는 발생우려시
  - 발동시 考慮事項
    - 캐나다 소비자의 立場, 캐나다의 國際的 義務, 輸出業者에 의한 보복여부, 對外貿易政策, 輸入制限의 必要性, 輸出業者의 輸出自律規制 與否
  - 美國과는 FTA에 의하여 별도의 適用基準 마련
  - 일반의 치명적 被害 以外에는 緊急輸入制限措置 適用 배제
  - 類型 : 長期的 措置와 短期的 措置가 있음.

	長期的 措置	短期的 措置
被害判定 機關	캐나다 國際 貿易裁判所	財務長官
有效期間	3 年	180 日
措置方法	附加稅(Surtax)賦課, 쿼타適用, 調整支援等	

- 特惠關稅對象 輸入에 대한 緊急輸入制限 措置
  - 發동요건 : 여타 구제조치에 비하여 상당히 緩和
    - 단순히 '被害(injury)'가 있으면 充足됨
    - 이는 덤핑防止 · 補助金 相計關稅의 '實質的 被害(material injury)' 및 일반적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심각한 被害(serious injury)' 보다 훨씬 덜 嚴格한 發동요건임.
  - 主要對象國 : 開途國, 最貧國, CARIBCAN 特惠貿易 對象國등
  - 主要對象品目 : 農産物, 纖維, 衣類등

#### 다. 割當關稅(Tariff quotas)

- 세가지 目的으로 賦課 可能
  - o 특정국의 캐나다 貿易에 대한 차별 관행에 대한 보복 및 貿易協定에 있어 캐나다의 권리의 수행
  - o 一般 緊急輸入制限措置
  - o GPT에 의한 被害로서의 緊急輸入制限措置
    - ※ 현재까지 위의 세 목적으로 割當, 關稅를 賦課한 事例가 없음.
- FTA에 의해 2가지 유형의 商品에 대한 準 割當關稅 賦課
  - o 對象品目: 衣類, 의류장식품(원료가 제 3국의 것으로서 재단 및 재봉이 美國에서 행하여진 것)
  - o 措置: 特惠貿易對象 輸入品の 양을 特別히 制限

#### 라. 輸入監視制

- 性格: 産業被害救濟를 위한 保護措置의 前段階 措置
  - o 問題가 있다고 判斷되는 品目を 選定, 일정기간 그 輸入動向을 綿密히 점검하는 制度
- 對象品目: 탄소강, 特殊鐵鋼製品, 과일, 야채, 纖維, 衣類
- 과일, 야채에 대한 수입감시제는 FTA 내용의 一部를 構成
  - o 美國으로부터의 輸入品の 價格과 物량에 대한 情報를 매일 蒐集

- 輸入商品의 價格과 量의 감시결과에 따라서 잠정관세 부과
  - o 잠정 관세는 MFN 관세를 초과하지 않음.

## 7. 觀察 및 評價

- 캐나다의 平均關稅率 水準은 낮으나 美國으로부터의 輸入이 全體 輸入의 2/3를 차지하는 貿易構造의 特性 및 FTA의 影響을 고려할 때 여타 國家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關稅障壁을 維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特히, 開途國에 대한 GPT의 경우 GPT 수혜개도국으로부터의 輸入이 全體 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약 6%임을 볼때 特惠稅率 및 低關稅率이 開途國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고는 볼 수 없음.
- 또한, 덤핑防止關稅의 경우에도 '80년대에는 주된 對象國이 美國이었으나 최근 美國에 대한 措置는 줄어들고 韓國, 臺灣等 開途國에 대한 措置가 增加되어 開途國에 대한 保護主義的 性向을 엿볼 수 있음.
- 美國과의 FTA 協定에 의해 '98년부터 모든 部門에 關稅가 철폐되는 바, 제 3국의 대 캐나다 輸出이 상당한 影響을 받을 것으로 보임.

表1.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金額：千萬弗，比率：%)

商品分野	輸 出				輸 入			
	'80		'90		'80		'90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食 品	7,601	11.0	13,986	10.3	9,439	12.2	15,134	10.7
原 材 料	1,300	1.9	2,295	1.7	3,231	4.2	4,492	3.2
원 광 · 鑛 產 物	810	1.2	1,134	0.8	2,066	2.7	2,364	1.7
燃 料	5,525	8.0	4,964	3.7	17,582	22.7	12,460	8.8
非 鐵 金 屬	1,868	2.7	2,466	1.8	2,494	3.2	3,371	2.4
鐵 鋼	3,614	5.2	5,204	3.9	2,675	3.5	4,556	3.2
化 學 製 品	7,873	11.4	16,271	12.0	6,078	7.9	14,119	10.0
其 他 半 加 工 品	6,880	10.0	12,466	9.2	6,270	8.1	12,599	8.9
發 電 用 機 械	926	1.3	2,092	1.5	620	0.8	1,728	1.2
其 他 非 電 氣 機 械	7,319	10.6	14,626	10.8	4,346	5.6	10,481	7.4
事 務 器 機 · 通 信 裝 備	2,778	4.0	8,298	6.1	3,234	4.2	11,591	8.2
電 氣 機 械 · 裝 備	2,359	3.4	5,436	4.0	1,755	2.3	4,933	3.5
自 動 車	6,512	9.4	15,838	11.7	4,471	5.8	13,043	9.2
其 他 輸 送 裝 備	2,462	3.6	5,325	3.9	2,034	2.6	4,717	3.3
織 維	2,546	3.7	4,715	3.5	2,372	3.1	4,600	3.3
衣 類	1,544	2.2	3,789	2.8	2,043	2.6	5,068	3.6
其 他 消 費 財	5,555	8.1	13,383	9.9	5,051	6.5	12,868	9.1
總 計	68,959	100.0	135,143	100.0	77,402	100.0	141,193	100.0

※ '80年은 9個會員國, '90年은 12個 會員國 基準임

表2. EC의 分野別 貿易相對國 比重

(’90基準, %)

	輸 出					輸 入				
	域內	EFTA	美國	日本	其他	域內	EFTA	美國	日本	其他
食 品	72	5	4	2	17	66	3	5	—	26
原 材 料	71	11	3	1	14	37	17	9	—	37
원 광 · 鑛 產 物	73	10	2	2	13	39	7	7	—	47
燃 料	64	11	10	0	15	26	11	3	—	60
非 鐵 金 屬	69	12	6	2	11	52	15	3	1	29
鐵 鋼	65	9	6	0	20	74	13	1	1	11
化 學 製 品	60	10	6	3	21	73	10	8	2	7
其 他 半 加 工 品	61	11	6	2	20	61	20	4	2	13
發 電 用 機 械	37	8	26	1	28	45	8	34	2	11
其 他 非 電 氣 機 械	48	12	8	2	30	68	14	7	6	5
事 務 器 機 · 通 信 裝 備	67	10	6	1	16	45	5	16	17	17
電 氣 機 械 · 裝 備	56	13	6	2	23	63	10	9	8	10
自 動 車	69	9	8	2	12	80	6	3	10	1
其 他 輸 送 裝 備	50	7	11	30	2	48	5	1	6	40
纖 維	65	9	4	2	20	68	8	3	2	19
衣 類	65	17	5	1	12	47	3	4	0	46
其 他 消 費 財	55	15	10	3	17	57	10	11	6	16
計	60	10	7	2	21	58	10	7	4	21

表3. EC의 平均關稅率 水準

(單位: %)

	全 體		農 產 物 (單純平均)	工 產 品 (單純平均)
	單純平均	加重平均		
稅 率	7.3	5.1	12.4	6.4

表4. 關稅率別 MFN 輸入額 比重

(’88基準, %)

關稅率範圍	農產品	工產品	全體
無稅	38.4	29.3	30.0
0~5%	12.7	25.6	24.8
5.1~10%	16.3	35.0	33.7
10.1~15%	6.7	9.0	8.8
15.1~20%	7.6	0.6	1.1
20.1% 以上	2.9	0.0	0.2
不特定	15.4	0.5	1.4
全體	100	100	100

表5. UR協商前後 讓許範圍 比較

(單位: %)

	品目數 基準		輸入額 基準	
	UR前	UR後	UR前	UR後
農產物	64.9	NA	88.0	NA
工產品	99.5	99.7	99.6	99.9
全體	92.3	NA	99.0	NA

表6. EC의 特惠輸入比重

(單位: %)

	'77~'79	'87~'89
特惠貿易對象	63.2	57.3
EFTA 協定國	17.3	23.5
지중해 연안國家 <sup>1)</sup>	5.3	6.8
Lome 協定國 <sup>2)</sup>	7.1	4.5
其他 GSP 受惠國	33.6	22.5
非特惠貿易對象	36.8	42.7
計	100	100

1) : Algeria, Cyprus, Egypt, Israel, Jordan, Lebanon, Malta, Morocco, Syria, Tunisia, Turkey, Yugoslavia.

2) : Bahamas, Comoros, Papua New Guinea 등 69個 ACP國家

表7. GSP 受惠國으로부터의 輸入中 實際 受惠 比重

(’88基準, %)

MFN 無稅 通 用	GSP 除 外	GSP對象	實際受惠	受惠除外	計
39	14	47	19	28	100

表8. 食品類의 可變 輸入賦課金 賦課對象의 比重變化

(單位: %)

	1978	1989
品目數基準	40	33
輸入額基準	20	12

表9. EC의 덤핑規制措置 件數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80~'89 總計
提 訴	20	29	24	27	71	62	46	75	57	38	449
調 查 開 始	25	47	55	36	49	36	24	39	40	27	378
措 置	53	16	42	47	32	12	29	16	18	14	279
덤핑防止關稅	7	10	7	20	5	8	4	8	18	9	96
價 格 約 속	46	6	35	27	27	4	25	8	-	5	183
덤핑사실 없음	7	7	3	3	4	2	4	4	-	-	4
被害事實 없음	1	6	6	8	6	15	7	4	5	5	63
實 行 中 인 措 置*	53	69	111	156	187	166	187	169	133	120	-

※ '80. 1. 1 以後 취해진 措置

表10. 現行 緊急輸入制限措置 內譯

施行國	對 象 品 目	措 置 內 容	導 入 時 期
EC	· 건포도	최소 수입가격 설정	1982. 10
	· 모델로 버찌	최소 수입가격 설정	1985. 6
	· 加工 버찌	최소 수입가격 설정	1989. 7
獨 逸	· 경석탄 및 경석탄 製品	個別 輸入許可制	1958. 9

表11. 年度別 EC 및 個別會員國의 緊急輸入制限措置 內譯

(單位：件數)

		'60~'69	'70~'79	'80~'89	'60~'89
E	C	0	4	13	17
(個別 構成國)		(3)	(0)	(0)	(3)
農產物 및 食品		0	1	9	10
電氣·電子製品		0	2	2	4
織 維		0	1	1	2
其 他		0(3)	0	1	1(3)

表12.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金額：千萬弗，比率：%)

商品分野	輸 出				輸 入			
	'80		'90		'80		'90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食 品	778	12.0	1,090	8.6	431	7.3	714	6.1
原 材 料	706	10.9	1,144	9.0	125	2.1	187	1.6
원 광 · 鑛 產 物	476	7.3	530	4.2	214	3.6	191	1.6
燃 料	939	14.5	1,267	10.0	716	12.1	726	6.2
非 鐵 金 屬	391	6.0	544	4.3	75	1.3	169	1.5
鐵 鋼	178	2.7	205	1.6	128	2.2	229	2.0
化 學 製 品	352	5.4	666	5.2	325	5.5	775	6.7
其 他 半 加 工 品	605	9.3	1,211	9.5	353	6.0	843	7.2
發 電 用 機 械	69	1.1	175	1.4	70	1.2	160	1.4
其 他 非 電 氣 機 械	277	4.3	479	3.8	734	12.4	1,182	10.2
事 務 器 機 · 通 信 裝 備	170	2.6	562	4.4	353	6.0	1,047	9.0
電 氣 機 械 · 裝 備	44	0.7	254	2.0	124	2.1	564	4.8
自 動 車	916	14.1	2,844	22.4	1,151	19.5	2,464	21.2
其 他 輸 送 裝 備	191	2.9	409	3.2	241	4.1	435	3.7
織 維	31	0.5	69	0.5	128	2.2	233	2.0
衣 類	21	0.3	33	0.3	71	1.2	239	2.1
其 他 消 費 財	144	2.2	425	3.3	443	7.5	1,120	9.6
總 計	6,493	100.0	12,690	100.0	5,898	100.0	11,645	100.0

表13. 캐나다의 主要 貿易相對國 比重

(單位：%)

輸 出					輸 入				
國 家	'80	'85	'90	國 家	'80	'85	'90		
美 國	63.4	77.8	75.0	美 國	70.3	70.8	64.6		
E C	13.2	5.6	8.1	E C	8.4	10.4	11.5		
日 本	5.7	4.6	5.5	日 本	4.0	5.9	7.0		
中 國	1.1	1.0	1.1	韓 國	0.6	1.0	1.7		
韓 國	0.7	0.6	1.1	臺 灣	0.8	1.2	1.6		
蘇 聯	2.0	1.3	0.8	맥 시 코	0.5	1.3	1.3		
스 위 스	0.5	0.3	0.7	노 르 웨 이	0.1	0.2	1.2		
濠 洲	0.9	0.6	0.6	中 國	0.2	0.4	1.0		
臺 灣	0.3	0.3	0.5	홍 콩	0.8	0.9	0.8		
홍 콩	0.2	0.3	0.5	스 웨 덴	0.6	0.7	0.7		
先 進 國	85.2	89.8	91.2	先 進 國	86.0	89.5	87.0		
開 途 國	10.6	6.8	6.8	開 途 國	13.3	9.9	10.4		
아 시 아	2.9	2.5	3.6	아 시 아	3.1	4.0	5.6		
中 南 美	5.1	2.7	1.8	中 南 美	5.7	4.8	3.4		
中 東	1.1	0.5	0.7	中 東	4.3	0.3	0.7		
아 프 리 카	1.4	1.1	0.7	아 프 리 카	0.3	0.8	0.7		
東 歐 圈	3.9	2.6	2.0	東 歐 圈	0.6	0.6	1.4		

表14. 加工度別 稅率水準

('88 基準, %)

		原 材 料	半加工品	完 製 品
農 產 物	單 純 平 均	2.8	4.7	7.7
	加 重 平 均	1.1	2.5	5.1
工 產 品	單 純 平 均	1.8	7.4	7.5
	加 重 平 均	0.2	5.3	3.7

表15. 關稅率 分布別 讓許現況

(’88 品目數 基準, %)

關稅率	農產物	工產品	全體
非讓許	5.4	1.0	1.6
讓許	94.6	99.0	98.4
無稅	36.3	19.8	22.3
0.1~5	15.6	4.1	5.8
5.1~10	17.4	28.2	26.5
10.1~15	15.8	33.1	30.5
15.1~20	8.0	3.6	4.3
20.1~25	0.9	10.3	8.8
25이상	0.6	0.1	0.1
全體	100	100	100

表16. UR協商 前後 讓許範圍 比較

(單位：%)

	品目數 基準		輸入額 基準	
	UR前	UR後	UR前	UR後
農產物	94.8	100	98.3	100
工產物	99.1	99.8	99.5	99.7
全體	98.4	99.8	99.4	99.8

표17. 캐나다의 덤핑防止 措置

措置種類	國 家(件數)
덤핑防止關稅	美國(8) / 韓國, 臺灣(7) / 中國(5), 브라질(4) / 日本, 홍콩, 말레이지아, 폴란드(3) / 獨逸, 루마니아, 싱가포르, 泰國, 英國, 유고(2) / 아르헨티나, 체코슬로바키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스웨덴, 필리핀, 베네주엘라
價格約束	美國(5), 日本(1)

表18. 캐나다의 補助金相計關稅 措置

對 象 國 家	對 象 品 目
EC 및 개별 EC 구성국	햄통조림(1989), 런천미트(1990), 무골쇠고기(1991)
브 라 질	여성용 가죽부츠·신발, 루스리프식 노트, 전기모터
美 國	옥수수

새질서 새생활로

문화국민 긍지찾자